농어가목돈마런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825

발의연월일: 2024. 9. 9.

발 의 자:이정문・박 정・조승래

이학영 • 이연희 • 이훈기

문진석 · 서영석 · 이인영

임광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ESG(Environment, Social, Governance)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,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 원칙임.

이러한 사회적 책임투자는 2005년에 UN에서 6가지 투자 원칙(UN PRI)을 천명한 이후 서명을 통해 세계 각국 및 기업에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,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법 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도입하고 있으며, 해외 국부펀드 중에서 노르웨이의 정부연기금(GPFG)등 주요연기금에서 도입하고 있음.

이에 농어가목돈마런저축장려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8 조제5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4항제1호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·사회·지배구조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기금의 운용・관리) ① ~	제8조(기금의 운용・관리) ① ~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⑤ 제4항제1호에 따라 기금을
	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
	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
	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
	•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
	<u>할 수 있다.</u>